

# 정..관..정..비

## 코스닥 심사 청구의 사전준비(1)

코

스탁에 상장하려면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준비 기업은 '코스닥상장기업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개정 내용 중 등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상장준비 기업이 정관 개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주주는 신주발행 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동 조항을 정관에 신설해야 한다. 이 경우 3자에게 배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예를 들면,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규정해야 하며, 상장을 위한 공모를 예정 중인 기업은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근거 조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둘째, 수권주식 수 및 액면가에 대한 조항이다. 신주 공모로 발행주식 수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정관상의 수권주식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수권주식 수를 늘려야 한다. 또한 액면가의 경우 현행 상법상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액상의 제한은 없으나, 코스닥상장 규정상에는 액면가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규정을 충족하면서 매개개시 후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액면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참고로 2004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80.4%가 액면가 500원이었으며, 거래소 상장법인의 71.7%가 5000원이었다.

셋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조항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가 상이하므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상장 이후를 대비하여 증권거래법에 맞게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총 발행주식 수의 15% 이므로 이에 맞춰 한도를 조정해야 하고, 또한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외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정관 기재 사항의 기재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정을 충족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넷째, 주식의 양도제한과 관련된 조항이다. 주식이 분산되어 있지 않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 양도 시 회사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정관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심사요건은 '정관 등에 양도제한이 없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이전에 동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명의개서대행기관과 관련된 조항이다.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은 상장 시 심사요건이기도 하며, 상장 후 원활한 주식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 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및 발행요건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특성상 기재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 전 정관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상장 이전은 주주 수가 비교적 적어 주주총회 소집이나 정관 변경 안의 승인이 용이한 편이지만, 상장 이후에는 주주 수가 급증하고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상장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